

부산지방법원 2022. 5. 12 선고 2021가단33185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3. 31.

판 결 선 고 2022. 5. 1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9. 29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D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, 주식회사 E(이하 'E'이라고만 한다)은 위 공사의 시행자인데, 원고와 E은 2018. 5. 29.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공사를 타절하였다. 그런데 원고가 2017. 9. 28. E 대표자의 지인인 피고에게 60,000,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, 피고와 E에 이와 관련한 소명 및 세금계산서 발생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편취해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2. 판단

가. 관련 법리

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.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, 취소,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·증명하여야 하고,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·증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7다37324 판결).

나. 이 사건의 경우

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2017. 9. 28. 피고에게 60,000,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.

그러나 원고가 피고나 E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, 갑 제1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원고는 2017. 9. 28.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동시에 공사대금으로 F에게 4,000,000원을, G에게 15,000,000원을, H회사에 20,800,000원을, I(J회사)에게 10,000,000원을 각 송금한 점, 피고는 2017. 9. 28. 원고로부터 60,000,000원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E에 전액을 이체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, 위 인정사실 및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

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우경아